

제22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구청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서구가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의 지원) ①상인회는 법 제65조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 제7항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서류비치 등) ①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 ②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 내지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 내지 제29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6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27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 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7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29조(시설물의 소유권) ①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0조(위탁관리) ①구청장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주차장조례」, 「인천광역시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1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탁자는 재난에 대비하여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과 이용객을 위한 상해보험을 매년 1월까지 가입하여 가입 후 7일 이내에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35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 제3항에 의한다.

제37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38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2조 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제40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는 기 등록된 인정시장과 상인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점가진흥협동조합은 이 조례에 의하여 상인회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추진중인 가좌시장 상업기반시설현대화사업·공중화장실 및 주민편의시설 건립, 신거북시장 공중화장실 및 주민편의시설 건립, 강남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은 이 조례의 검토를 마친 것으로 본다.

| 남부종지서 | | 영수필통지서(1) | | 영수필통지서(2) | | 영수증 | |
|--|--|--|--|--|--|--|--|
| (별지 제1호서식) | | | | | | | |
| 제 호 | 년도 일반회계 | 제 호 | 년도 일반회계 | 제 호 | 년도 일반회계 | 제 호 | 년도 일반회계 |
| 세입과목 | (관)영시세의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 세입과목 | (관)영시세의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 세입과목 | (관)영시세의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 세입과목 | (관)영시세의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
| 위반사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옥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 위반사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옥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 위반사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옥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 위반사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옥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
| 납부 의무 자 | 단체명 성 명 주 소 | 납부 의무 자 | 단체명 성 명 주 소 | 납부 의무 자 | 단체명 성 명 주 소 | 납부 의무 자 | 단체명 성 명 주 소 |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금액 |
| 납입 기 한 | 년 월 일 | 납입 기 한 | 년 월 일 | 납입 기 한 | 년 월 일 | 납입 기 한 | 년 월 일 |
| 납입 장 소 | 신라은행 본점, 지 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 납입 기 한 | 년 월 일 | 납입 기 한 | 년 월 일 | 납입 기 한 | 년 월 일 |
| 위 의 과 태 료 는 재래시장 및 상점 가 옥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납 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의 과 태 료 는 재래시장 및 상점 가 옥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납 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의 과 태 료 는 재래시장 및 상점 가 옥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납 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의 과 태 료 는 재래시장 및 상점 가 옥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납 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의 과 태 료 는 재래시장 및 상점 가 옥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납 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의 과 태 료 는 재래시장 및 상점 가 옥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납 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의 과 태 료 는 재래시장 및 상점 가 옥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납 부하시기 바랍니다. | 위 의 과 태 료 는 재래시장 및 상점 가 옥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납 부하시기 바랍니다. |
| 인원광역시 서구 징수관(인) | 인원광역시 서구 징수관(인) | 인원광역시 서구 징수관(인) | 인원광역시 서구 징수관(인) | 인원광역시 서구 징수관(인) | 인원광역시 서구 징수관(인) | 인원광역시 서구 징수관(인) | 인원광역시 서구 징수관(인) |
| A80 x 180mm 신문용지 54kg/㎡ | A80 x 180mm 신문용지 54kg/㎡ | A80 x 180mm 신문용지 54kg/㎡ | A80 x 180mm 신문용지 54kg/㎡ | A80 x 180mm 신문용지 54kg/㎡ | A80 x 180mm 신문용지 54kg/㎡ | A80 x 180mm 신문용지 54kg/㎡ | A80 x 180mm 신문용지 54kg/㎡ |
| 수입일 부 인 | 수입일 부 인 | 수입일 부 인 | 수입일 부 인 | 수입일 부 인 | 수입일 부 인 | 수입일 부 인 | 수입일 부 인 |
| OO은행 OO지점 | OO은행 OO지점 | OO은행 OO지점 | OO은행 OO지점 | OO은행 OO지점 | OO은행 OO지점 | OO은행 OO지점 | OO은행 OO지점 |

| 남부통지서 | | 영수권통지서(1) | | 영수권통지서(2) | | 영수증 | |
|--------------------------|---|-----------|--------------------------|-------------------------------|--------------------------|--------|-------------------------------|
| (별지 제2호서식) | | | | | | | |
| 제 호 | 년도 | 일반회계 | 제 호 | 년도 | 일반회계 | 제 호 | 년도 |
| 세입과목 | (간)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대료 | | 세입과목 | (간)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대료 | | 세입과목 | (간)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대료 |
| 위반사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 | 위반사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 | 위반사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
| 단 체 명 | | | 단 체 명 | | | 단 체 명 | |
| 성 명 | | | 성 명 | | | 성 명 | |
| 주 소 | | | 주 소 | | | 주 소 | |
| 과대료 금액 | | | 과대료 금액 | | | 과대료 금액 | |
| 납 임 기 한 | 년 | 월 | 일 | 년 | 월 | 일 | 년 |
| 납 임 장 소 | 시내각은행 본점, 지정 예금취급소, 동점,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수입일 | 수입일 | | OO은행 OO지점 | | OO은행 OO지점 | | OO은행 OO지점 |
| 인원광역시 서구 경수관(인) | 인원광역시 서구 경수관(인) | | 인원광역시 서구 경수관(인) | | 인원광역시 서구 금고 귀하 | | 수입일 |
| 890 x 180mm | 890 x 180mm | | 890 x 180mm | | 890 x 180mm | | 수입일 |
| 신도용지 54kg/m ² | 신도용지 54kg/m ² | | 신도용지 54kg/m ² | | 신도용지 54kg/m ² | | 신도용지 54kg/m ² |

